

■ 교원 연구년제 운영세칙 개정(안)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제7조2	(신설)	제7조의2(변경절차) 허가받은 연구년에 대한 변경(기간, 기관 등) 및 취소를 하고자 하는 교원은 변경일로부터 최소 1개월전까지 연구년 변경 신청서를 소속학과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년 기간변경의 경우, 제3조 및 제4조를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총장이 허가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연구년 변경에 대해 사후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통상 정해진 양식 없이 협조공문을 통해 제출된 변경/취소에 대하여 양식 및 근거 절차 명시 (기간 변경: 총장 승인, 기관 변경: 교무처 통보)
제8조	제8조(직무대행자의 임명) ①(신설) ②연구년을 허가받은 교원의 소속학과에서는 연구년을 허가받은 교원이 직접 수행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서는 대행자를 임명하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강의 2. 학부학생의 지도업무 3. 대학원생 논문연구지도 4. 수탁과제연구 5. 기타 각종 보직 및 위원회 관련 업무	제8조(직무대행자의 임명) ① 연구년 수행 교원은 직무를 떠나 연구활동에 집중하여야 함에 따라 총장이 임명하는 보직과 각종 위원회 등을 담당할 수 없다. 단, 총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 ②연구년을 허가받은 교원의 소속학과 주임교수는 연구년을 허가받은 교원이 직접 수행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서는 대행자를 임명하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강의 2. 학부학생의 지도업무 3. (삭제) 4. (삭제) 5. 학과내 각종 위원회 관련 업무	연구년 중, 교내 보직 수행 가능 근거 명시 보직 범위(총장이 임명하는 보직): 본부보직, 학과 주임교수, 부속기관장 및 부설연구소장 연구년 교원에 대한 학과 내 조치사항 및 조치 주체 명시